

GANGJIN 

# *Web Contents*



# 목차

목차	2
공중위생업 시설기준 - 미용업	3
미용업	3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3
시설기준	3
영업자 준수사항	3

공중위생업 시설기준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위생업소현황

 . 목욕장업 . 이용업 . **미용업** . 숙박업 . 세탁업 . 건물위생관리업

## 미용업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 일반미용업: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가기나 의약품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피부미용업: 의료가기나 의약품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 화장·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가기나 의약품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종합미용업: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 ○ 시설기준

### 1. 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발톱) 및 미용업(화장·분장)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2.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 4. 예외: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해당 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각각의 시설이 선·줄 등으로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

## ○ 영업자 준수사항

1. 점빠기·긁볼뿔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가기법」에 따른 의료가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미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4.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6. 영업소 내부에 미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7. 영업소 내부에 미용기구 소독기록을 게시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7.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8. 사목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지급요금표에는 일부항목(5개 이상)만을 표시할 수 있다.

9. 3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미용서비스의 최종 지급가격 및 전체 미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용업자는 해당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COPYRIGHT © GANGJIN-GUN. ALL RIGHT  
RESERVED.

GANGJIN

# ***Web Contents***

